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위치란의 “남구 상동”을 “원미구 상동”으로 하고 “중구”를 “원미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상동사회복지관	남구 상동 336-6		원미구 상동
춘의사회복지관	중구 춘의동 237		원미구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결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나. 내 용

- 조례의 제명 중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자립 장학금으로 개정
-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의료부조사 삭제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과장으로 개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0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생활보호법 개정 및 직제개편과 경기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조례명칭이 경기도자립장학금으로 변경되었기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명칭을 부천시자립장학금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자립장학금”으로 개정(안 제1조)
-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료부조자 삭제(안 제3조제1항)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안 제9조제4항)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저소득주민자녀”를 “자립”으로 한다.

제1조중 “저소득주민자녀”를 “자립”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9조제4항중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명).....	자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	제1조(목적)		
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				
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		자립.....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장학생의자격)(생략)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생략)	제3조(장학생의자격)(현행과 같음) 1.(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2.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관)①~③(생략) ④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u>사회산업과장</u>,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u>사회계장</u>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관)①~③(현행과 같음) ④.....<u>사회복지과장</u>,